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회



# 목 차

□ 결산검사 의견서 .....	3
I. 결산검사 개요 .....	5
1. 검사기간 .....	5
2. 결산검사 위원 .....	5
3. 결산검사 세부 일정 .....	5
4. 결산검사 진행방법 .....	5
II. 결산검사 결과 및 총평 .....	6
1. 재정의 개황 .....	6
(1) 재정여건 .....	6
(2) 재정건전성 .....	7
2. 세입·세출 결산 .....	9
(1) 총 괄 .....	9
(2) 일반회계 .....	11
가. 세 입 .....	11
나. 세 출 .....	14
(3) 특별회계 .....	16
가. 세 입 .....	16
나. 세 출 .....	17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18
3. 기금의 결산 .....	19
4. 재무제표의 결산 .....	21
5. 성과보고서 .....	23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24
III.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	26
I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32



2026. 4. 27.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 의견서

수신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6. 4. 8. ~ 4. 27.(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김 정 희 (북구의회 의원)
  - 검사위원 문 선 영 (공인회계사)
  - 검사위원 윤 태 호 (공인회계사)
  - 검사위원 서 정 남 (행정전문가)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 결산검사 의견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2026년 4월 2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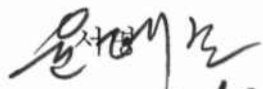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20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4월 8일부터 2026년 4월 2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조사 및 관계공무원 대상 질의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김 정 희	
검사위원	문 선 영	
검사위원	윤 태 호	
검사위원	서 정 남	



## I. 결산검사 개요

1. 검사기간 : 2026. 4. 8. ~ 4. 27.(20일간)

2. 결산검사 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대표위원	김 정 희	○ 총 괄
검사위원	문 선 영	○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전반, 기금, 재무제표, 공유재산, 물품
검사위원	윤 태 호	○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전반, 성과보고서, 채권, 채무 등
검사위원	서 정 남	○ 예산편성과 집행의 제반 제도운영의 적정성

3. 결산검사 세부 일정

일 자	결 산 검 사 내 용	비 고
4. 8.	○ 결산검사 개시(위원별 업무분장 및 검사 방향 등 논의)	
4. 9.~4. 21.	○ 결산서 검토 및 분야별 결산검사 진행	
4. 22.~4. 24.	○ 최종 자료 검토 및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등	
4. 27.	○ 수검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등 결산검사 정리	

4. 결산검사 진행 방법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
- 예산편성과 제반 제도운영의 적정성
-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의 토의 등

## II. 결산검사 결과 및 총평

### 1. 재정의 개황

####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세 입	565,247,834	593,490,831	593,250,220	588,376,908	650,966,948
	세 출	500,031,767	511,918,619	514,114,804	516,838,132	577,332,486
	결산상 잉여금	65,216,067	81,572,212	79,135,416	71,538,776	73,634,462
일반회계	세 입	552,387,372	589,812,888	586,740,099	580,949,443	642,646,487
	세 출	488,095,315	509,616,105	510,178,434	513,074,574	572,175,020
	결산상 잉여금	64,292,057	80,196,783	76,561,665	67,874,869	70,471,467
특별회계	세 입	12,860,462	3,677,943	6,510,121	7,427,465	8,320,460
	세 출	11,936,452	2,302,514	3,936,370	3,763,558	5,157,465
	결산상 잉여금	924,010	1,375,429	2,573,751	3,663,907	3,162,995

2025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세입결산액은 62,590,040천원(10.64%)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60,494,354천원(11.7%) 증가, 결산상 잉여금은 2,095,686천원(2.93%)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감소(17,332,465천원 수납, △0.54%)하였고 조정교부금 역시 감소(57,657,257천원 수납, △7.47%)하였으며, 자체수입인 세외수입(33,379,070천원 수납, 9.54%)은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수입(94,838,466천원 수납, △0.73%)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세출결산액을 2025년말 기준 주민수 215,220명으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 2,387천원 대비 296천원 증가(12.4%)한 2,683천원입니다.

최근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천원)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0	0	0	0	0
채무부담행위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없 음

최근 5년간 채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2) 재정건전성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액 기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예산규모	596,759,149	20.98% (전년도 22.94%)	33.36% (전년도 37.64%)
지 방 세	94,838,466		
세외수입	30,372,596		
지방교부세	17,332,465		
조정교부금	56,527,000		
보 조 금	369,420,751		
지 방 채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267,871		

※ 예산규모 등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값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도의 재정자립도는 20.98%로 전년 대비 1.96%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높습니다. 2025년도의 재정자주도는 33.36%로 전년 대비 4.2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과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대비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 [산출산식]

□ 재정자립도 = 20.98%

- 산출산식 :  $\{(\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 / \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재정자주도 = 33.36%

- 산출산식 :  $\{(\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 / \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2. 세입·세출 결산

### (1) 총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입 ·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C=A-B)	
계	652,388,127	650,966,948	577,332,486	73,634,462	
일 반 회 계	644,710,553	642,646,487	572,175,020	70,471,467	
특 별 회 계	7,677,574	8,320,460	5,157,465	3,162,995	
특 별 회 계	소 계	7,677,574	8,320,460	5,157,465	3,162,99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611,163	612,912	610,122	2,79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4,923	432,621	357,005	75,617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특별회계	1,154,502	1,159,536	1,116,610	42,926
	주차장특별회계	5,496,986	6,115,391	3,073,728	3,041,662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0	0	0	0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현 년 도 채무상환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명 시	사 고	계 속 비	보 조 금 반 납 금	순 세 계 잉 여 금
계	0	6,467,387	1,859,420	48,022,526	5,099,423	12,185,706
일 반 회 계	0	6,467,387	1,859,420	48,022,526	5,028,450	9,093,684
특 별 회 계	0	0	0	0	70,973	3,092,022
특 별 회 계	소 계	0	0	0	70,973	3,092,022
	발전소주변지역 자원사업특별회계	0	0	0	47	2,74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0	0	0	54,376	21,240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0	0	0	0	42,926
	주차장특별회계	0	0	0	16,549	3,025,113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0	0	0	0	0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50,966,948천원으로 예산현액 652,388,127천원보다 1,421,179천원이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9%인 577,332,486천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73,634,462천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56,349,333천원(명시이월 6,467,387천원, 사고이월 1,859,420천원, 계속비이월 48,022,526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5,099,42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2,185,706천원입니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결 산 액	644,710,553	658,261,045	642,646,487	1,196,344	14,418,213
결산확인액	644,710,553	658,261,045	642,646,487	1,196,344	14,418,213
차 액	0	0	0	0	0

수납액 642,646,487천원은 예산현액의 99.7%로서 2,064,066천원이 과소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642,646,487	642,646,487	0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습니다.

연도별 세입 현황 분석

(단위: 천원, %)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정 리 보류액	예산대비 징수 결정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 대비 정리보류액
2025년	644,710,553	658,261,045	642,646,487	1,196,344	102.10	97.63	0.18
2024년	580,409,961	596,377,245	580,949,443	527,929	102.75	97.41	0.09
증감	64,300,592	61,883,800	61,697,044	668,415	△0.65	0.22	0.09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의 감소는 지방세수입 698,841천원, 조정교부금 5,033,000천원 등의 감소에 기인합니다. 수납액은 전년도 580,949,443천원보다 61,697,044천원이 증가한 642,646,487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전년도 527,929천원보다 668,415천원이 증가한 1,196,344천원입니다. 정리보류액의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641,044천원, 무재산 314,640천원, 평가액 부족 214,855천원, 행방불명 24,60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계	644,710,553	658,261,045	642,646,487	1,196,344	14,418,213	
지방세수입	소계	95,521,000	99,187,399	94,838,466	250,486	4,098,447
	등록면허세	5,520,000	5,844,982	5,820,488	130	24,364
	주민세	29,880,000	29,508,239	29,435,950	0	72,290
	재산세	47,671,000	48,968,210	47,264,930	13,510	1,689,770
	지방소비세	11,400,000	11,045,253	11,045,253	0	0
	지난연도수입	1,050,000	3,820,715	1,271,845	236,846	2,312,024
세외수입	소계	29,392,716	41,493,661	30,372,596	945,859	10,175,206
	재산임대수입	587,481	554,095	547,561	0	6,534
	사용료수입	5,859,187	5,915,623	5,883,262	0	32,361
	수수료수입	7,180,449	7,215,540	7,214,590	0	950
	징수교부금수입	9,872,850	9,993,893	9,993,893	0	0
	이자수입	1,817,797	1,950,641	1,950,191	0	449
	재산매각수입	3,100	7,634	7,634	0	0
	보조금반환수입	623,073	675,424	660,777	0	14,648
	기타수입	1,350,507	1,877,413	1,656,892	0	220,521
	과징금	67,646	75,907	74,407	0	1,500
	이행강제금	260,000	328,224	130,613	0	197,610
	변상금	3,000	64,091	9,152	0	54,939
	과태료	634,729	1,242,646	792,723	0	449,923
	환수금	2,918	23,328	3,839	0	19,489
	부담금	214,979	535,451	239,139	8	296,303
	범칙금	15,000	14,700	14,300	0	400
	지난연도수입	900,000	11,019,052	1,193,623	945,851	8,879,579
지방교부세	19,063,000	17,332,465	17,332,465	0	0	
조정교부금등	56,527,000	56,527,000	56,527,000	0	0	
보조금	369,920,025	369,420,751	369,420,751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4,286,812	74,299,769	74,155,209	0	144,560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14.6%인 94,838,466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5.1%인 30,372,59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인 17,332,465천원, 조정교부금등은 8.9%인 56,527,000천원, 보조금은 56.8%인 369,420,751천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인 74,155,209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나. 세 출

###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등	불용액
결 산 액	598,823,214	644,710,553	572,175,020	61,374,764	11,160,769
결산확인액	598,823,214	644,710,553	572,175,020	61,374,764	11,160,769
차 액	0	0	0	0	0

예산액은 598,823,214천원이나 전년도에서 45,887,339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644,710,553천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8.7%인 572,175,020천원이며,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은 예산현액 대비 9.52%인 61,374,764천원입니다.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3%인 11,160,769천원입니다. 불용액 사유 별로는 보조금정산잔액 2,752,703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454,380천원, 낙찰차액 224,746천원, 지출잔액 3,356,079천원, 예비비 4,372,861천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용 등 총 17건(150,991천원), 이체는 2025. 7.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 총 128건(61,159,391천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498,861천원으로 '종량제 규격 봉투 관리사업' 1건 126,000천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며 118,773천원 지출하여 7,22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72,175,020	572,175,020	0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습니다.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지출액	2025회계연도			전년 대비 증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	금 액	집행율 (%)
<b>계</b>	<b>513,074,574</b>	<b>644,710,553</b>	<b>572,175,020</b>	<b>88.4</b>	<b>59,100,446</b>	<b>11.52</b>
일반공공행정	22,647,946	22,253,168	21,935,148	97.87	△712,798	△3.15
공공질서 및 안전	2,485,029	2,968,610	2,728,353	95.17	243,324	9.79
교육	2,048,076	1,950,445	1,938,019	99.11	△110,057	△5.37
문화 및 관광	28,514,370	39,992,913	28,079,032	68.14	△435,337	△1.53
환경	14,349,615	15,387,771	15,016,422	90.47	666,807	4.65
사회복지	281,054,359	297,511,254	291,493,515	97.2	10,439,156	3.71
보건	19,059,817	16,760,035	16,450,614	94.33	△2,609,202	△13.69
농림해양수산	24,478,378	27,822,531	25,540,043	91.42	1,061,665	4.3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636,142	63,728,883	62,746,239	98.1	59,110,097	1625.63
교통 및 물류	14,034,154	20,891,337	15,205,692	53.52	1,171,538	8.35
국토 및 지역개발	32,662,537	58,712,569	19,443,302	62.53	△13,219,235	△40.47
예비비 및 기타	68,104,151	76,731,036	71,598,643	88.91	3,494,492	5.13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91,493,515천원, 예비비 및 기타 71,598,643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62,746,239천원 순이며, 전년 대비 지출 증감액은 59,100,446천원으로 11.52%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3) 특별회계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7,677,574	9,104,982	8,320,460	80,296	704,226
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611,163	612,912	612,912	0	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4,923	432,671	432,621	0	50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154,502	1,159,536	1,159,536	0	0
주차장 특별회계	5,496,986	6,899,863	6,115,391	80,296	704,176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	-	-	-

특별회계는 총 5종으로 세입결산 결과 9,104,982천원을 징수결정하고, 8,320,460천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1.38%이며, 이는 예산현액 7,677,574천원의 108.4%로서 642,886천원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8,320,460	8,320,460	0

특별회계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습니다.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등	불용액
합 계	6,495,765	7,677,574	5,157,465	70,973	2,449,13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69,317	611,163	610,121	47	99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14,923	414,923	357,004	54,376	3,542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154,502	1,154,502	1,116,610	0	37,892
주차장 특별회계	4,857,023	5,496,986	3,073,728	16,549	2,406,709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	-	-	-	-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사항은 예산현액 7,677,574천원 중 67.18%인 5,157,465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70,973천원(0.92%)을 공제한 불용액은 2,449,136천원(31.9%)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157,465	5,157,465	0

특별회계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습니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당해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회계 이월 현황

(단위: 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잔액
		계 (건)	계속비이월 (건)	명시이월 (건)	사고이월 (건)	
78,458,168	21,322,708	56,349,333 (72)	48,022,526 (32)	6,467,387 (30)	1,859,420 (10)	786,128

일반회계의 이월 건수는 이월 사유별로 총 72건으로 계속비이월 32건 48,022,526천원, 명시이월 30건 6,467,387천원, 사고이월 10건 1,859,420천원입니다.

이월사업별로는 총 70개 사업이며 이월사유별 총 72건과의 차이는 한 사업의 이월사유가 2개인 사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문화체육과 1개[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공원녹지과 1개[가재골 공원 조성]입니다.

한편, 특별회계 이월 현황은 해당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3. 기금의 결산

#### (1) 기금 조성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 감 액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0,560,785	1,032,548	1,812,298	779,750	11,593,333
문 화 진 흥 기 금	1,020,844	8,979	33,979	25,000	1,029,823
남북교류협력기금	240,401	△3,223	7,777	11,000	237,178
공유재산관리기금	4,844,511	343,850	343,850	0	5,188,361
고 향 사 랑 기 금	216,429	168,053	168,053	0	384,482
사 회 복 지 기 금	900,015	15,896	68,896	53,000	915,911
재 난 관 리 기 금	2,226,894	475,559	969,422	493,862	2,702,453
옥외광고발전기금	789,361	13,326	149,197	135,871	802,687
식 품 진 흥 기 금	322,329	10,109	71,126	61,017	332,438

2025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10,560,785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812,298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779,750천원을 공제한 11,593,333천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공유재산 임대료·매각수입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032,54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액 886,912천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 적립하고 있으며, 문화진흥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6개 기금이 기금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았습니다.

(2)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 성 액	4,610,545	6,516,122	7,213,831	9,473,183	10,560,785	23
당해연도 조 성 액	3,295,715	1,685,374	2,972,157	2,167,629	1,812,298	△13.9
당해연도 사 용 액	1,390,138	987,665	712,805	1,080,027	779,750	△13.5
당해연도말 조 성 액	6,516,122	7,213,831	9,473,183	10,560,785	11,593,333	15.5

울산광역시 복구의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증가(15.5%)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기금 조성액에 비해 기금 사용액의 감소율이 약 0.4%p 낮기 때문입니다.

(3) 기금운용 현황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593,333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032,548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당해연도의 사용액은 779,750천원이며 기금 운용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 4. 재무제표의 결산

2025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172,273,344	1,297,561,694	125,288,350	10.69
Ⅰ. 유 동 자 산	100,970,712	102,235,580	1,264,868	1.25
Ⅱ. 투 자 자 산	1,786,137	1,756,302	(29,835)	(1.67)
Ⅲ. 일 반 유 형 자 산	69,679,006	71,316,140	1,637,134	2.35
Ⅳ. 주 민 편 의 시 설	376,943,222	398,946,034	22,002,812	5.84
Ⅴ. 사 회 기 반 시 설	620,909,189	721,156,701	100,247,512	16.15
Ⅵ.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985,078	2,150,937	165,859	8.36
부 채	18,505,566	16,531,002	(1,974,564)	(10.67)
Ⅰ. 유 동 부 채	8,228,429	6,458,194	(1,770,235)	(21.51)
Ⅱ. 장 기 차 입 부 채	-	-	-	-
Ⅲ.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0,277,137	10,072,808	(204,329)	(1.99)
순 자 산	1,153,767,779	1,281,030,692	127,262,913	11.03
Ⅰ. 고 정 순 자 산	1,069,405,617	1,193,458,933	124,053,316	11.60
Ⅱ. 특 정 순 자 산	11,149,794	12,164,617	1,014,823	9.10
Ⅲ. 일 반 순 자 산	73,212,368	75,407,142	2,194,774	3.00

2025회계연도 말 울산광역시 북구의 자산은 1조 2,975억원으로 전년도 1조 1,722억원 보다 1,253억원(10.69%)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반유형자산 16억원(2.35%), 주민편의시설 220억원(5.84%), 사회기반시설 1,002억원(16.15%)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5회계연도 말 울산광역시 북구의 부채는 165억원으로 전년도의 185억원 보다 19억원(10.67%)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동부채 17억원(21.51%), 기타비유동부채 2억원(1.99%)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2) 재정 운영 및 증감 현황

### 가. 기능별 분류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순원가(가-나)	103,691,656	99,366,081	(4,325,575)	(4.17)
가. 사업총원가	406,967,735	468,297,168	61,329,433	15.07
나. 사업수익	303,276,079	368,931,087	65,655,008	21.65
II. 관리운영비	69,954,755	74,483,386	4,528,631	6.47
III. 비배분비용	16,809,927	11,386,812	(5,423,115)	(32.26)
IV. 비배분수익	13,100,754	11,987,359	(1,113,395)	(8.50)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177,355,584	173,248,920	(4,106,664)	(2.32)
VI. 일반수익	191,834,407	194,655,413	2,821,006	1.47
VII. 재정운영결과(V-VI)	(14,478,823)	(21,406,493)	(6,927,670)	(47.85)

울산광역시 북구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993억원이고, 관리운영비 745억원, 비배분비용 114억원 및 비배분수익 120억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732억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946억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214억원입니다.

### 나. 성질별 분류

(단위: 천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인 건 비	79,984,344	84,812,025	4,827,681	6.04
운 영 비	146,240,739	89,464,147	(56,776,592)	(38.82)
정 부 간 이 전 비 용	5,375,815	5,459,401	83,586	1.55
민 간 등 이 전 비 용	238,898,090	356,455,167	117,557,077	49.21
기 타 비 용	23,233,429	17,976,626	(5,256,803)	(22.63)
비 용 총 계 ( A )	493,732,417	554,167,366	60,434,949	12.24
자 체 조 달 수 익	127,923,171	128,334,496	411,325	0.32
정 부 간 이 전 수 익	375,253,927	441,087,914	65,833,987	17.54
기 타 수 익	5,034,142	6,151,449	1,117,307	22.19
수 익 총 계 ( B )	508,211,240	575,573,859	67,362,619	13.25
재정운영결과(A-B)	(14,478,823)	(21,406,493)	(6,927,670)	(47.85)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비용은 5,54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4억원 증가하였으며, 수익은 5,75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7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214억원으로 전년도 145억원보다 69억원(47.85%)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익의 증가폭이 비용의 증가폭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 5. 성과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8호에 의거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에 의거 결산서의 구성요소로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북구’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비전-전략목표(10개)-정책사업 목표(8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총 15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 하였습니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 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B/A)
계	10	82	151	140	11	92.7
기획예산실	1	3	7	6	1	85.7
경제문화국	1	19	37	36	1	97.3
행정지원국	1	10	20	20	0	100
복지교육국	1	20	27	23	4	85.2
안전건설국	1	15	26	22	4	84.6
공원환경국	1	9	19	19	0	100
의회사무과	1	1	3	3	0	100
보건소	1	2	4	3	1	75
구립도서관	1	1	3	3	0	100
문화예술회관	1	2	5	5	0	100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국, 공원환경국,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은 100% 달성한 것에 비해, 기획예산실은 85.7%, 경제문화국은 97.3%, 복지교육국은 85.2%, 안전건설국은 84.6%, 보건소는 75%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성과 미달성 11개 지표와 초과 달성 13개 지표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잘하여 향후 재정 운영에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 채 권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702,942	79,876	99,552	1,683,266
일반회계	1,500,726	4,497	19,376	1,485,847
특별회계	3,171	10,724	13,845	50
의료급여	3,171	10,724	13,845	50
기 금	199,045	64,655	66,331	197,369
사회복지기금	199,045	64,655	66,331	197,369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683,266천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2) 채 무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0	0	0	0	0

###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천원)

구 분	채무액	2024년	2025년
합 계	0	0	0
차입금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검사결과 202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북구의 채무 및 채무상환 예정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3) 공유재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결산액	
		증	감		
계	902,344,728	125,974,281	1,073,889	1,027,245,120	
행정 재산	소 계	900,602,441	125,974,281	972,000	1,025,604,722
	공 용 재 산	105,644,434	2,380,338	103,204	107,921,568
	공공용재산	794,717,718	123,593,943	868,796	917,442,865
	기업용재산	0	0	0	0
	보 존 재 산	240,289	0	0	240,289
일 반 재 산	1,742,287	0	101,889	1,640,398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24,900,392천원이 증가한 1,027,245,120천원입니다.

### (4) 물 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939	22	97	864
금 액	9,933,730	88,779	203,225	9,819,284

물품 결산액은 당해연도 취득 22개 88,779천원, 처분 97개 203,225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기준 864개 9,819,284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75개 114,446천원 감소하였습니다.

###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 1. 세입세출 결산 분야

##### (1) 세입예산 미편성 최소화

(단위: 천원)

부서명	세입목	예산현액	실제수납액	비고
관광진흥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36,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10,698	
건축주택과	징수교부금수입	-	10,981	

- 「지방재정법」 제34조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수납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계획성을 훼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서상 2개 부서에서 예산 편성없이 실제 수납액이 발생(1천만 원 이상)하였으며, 그 총액은 57,679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관련부서에서는 세입예산 편성 시 예상되는 수입을 전액 계상하여 세입 편성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경에 반영하는 등 초과 세입이 표류 기간없이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금고 약정금리 검토 강화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공개된 울산시 구군별 금고 약정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 세입현액 (특별회계, 기금 포함)	정기예금				
		2년이상	2년미만	장기	중기	단기
북구	600,017	2.33	2.30	2.08	2.00	1.89
중구	684,368	2.34	2.30	2.09	2.00	1.89
남구	857,451	2.31	2.27	2.17	2.09	2.09
동구	476,128	2.33	2.30	2.08	2.00	1.89
울주군	1,798,772	2.47	2.40	2.17	2.05	1.96
구분	금고명	공공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대출	
			10억이상	5억이상~10억미만		
북구	NH농협은행	0.7	0.86	0.76	3.22	
중구	NH농협은행	0.7	1.70	1.60	3.21	
남구	NH농협은행	0.7	1.90	1.90	3.57	
동구	NH농협은행	0.7	0.86	0.76	3.20	
울주군	NH농협은행	0.7	0.90	0.90	3.22	

\* 약정기간 : 북구, 중구, 동구, 울주군('26. 1. 1.~'28. 12. 31.) / 남구('25. 1. 1.~'27. 12. 31.)

- 울산시 구군별 약정금리 비교 시 북구와 중구의 예산규모가 비슷함에도 수시입출금예금(MMDA)\*이자율은 0.84%가 낮습니다. 예산 집행시기를 사업부서와 사전 조율하여 한달 내 집행예정인 사업비를 단기간 예치 시 추가적인 이자수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해당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 MMDA :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억원 이상 금액을 최소 7일 이상 예치할 경우 월 복리 이자를 적용하며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로운 상품

구분	장기예금		중기예금	단기예금
	12월이상	6~12월	3월이상~6월미만	1월이상~3월미만
전국평균	2.53	2.38	2.26	2.13
강원	2.43	2.28	2.21	2.12
경기도	2.36	2.27	2.21	2.13
경남	2.40	2.32	2.14	2.08
경북	2.26	2.12	2.04	1.96
광주	2.67	2.45	2.33	2.28

구분	장기예금		중기예금	단기예금
	12월이상	6~12월	3월이상~6월미만	1월이상~3월미만
대구	2.31	2.08	1.86	1.53
대전	2.64	2.53	2.46	2.36
부산	2.55	2.44	2.27	1.86
서울	3.44	3.13	2.88	2.77
세종	2.68	2.55	2.36	2.13
<b>울산</b>	<b>2.31</b>	<b>2.12</b>	<b>2.02</b>	<b>1.92</b>
인천	3.36	3.19	2.97	2.79
전남	2.23	2.12	2.03	1.95
전북	2.29	2.13	2.01	1.96
제주	2.36	2.29	2.25	2.21

- 그간 금고 이자율 비공개로 적정 이자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금고 이자율의 편차가 크고,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유도가 어려워 관행적인 금고지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해 약정 이자율 공개 근거를 마련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통합자료에 따르면 울산의 장기, 중기, 단기예금금리 모두 전국평균보다 0.2% 이상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공개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참고하여 향후 금고 선정 시 현행 농협은행 단독입찰에서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국평균 이상의 이자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강화하여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을 책임성있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주차장특별회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대한 관리

- 최근 3개년도의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a)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예산액(b)	비율(b/a)	지출액	예산액(c)	비율(c/a)	지출액
2025년	4,857	49	1.01	-	2,249	46.30	-
2024년	4,195	42	1.00	-	1,082	25.79	-
2023년	3,124	31	0.99	-	1,184	37.90	-

-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경우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예산액이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25.8%에서 2025년 46.3%로 전년 대비 약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도한 편성은 필수사업에 예산이 적기·적소에 배정되지 않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이 증가된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바 적정수준의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2. 기금 결산 분야

### (1)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감액	조성액	사용액	
합 계	10,560	1,033	1,813	780	11,593
문화진흥기금	1,021	9	34	25	1,030
남북교류협력기금	240	△3	8	11	237
공유재산관리기금	4,845	343	343	-	5,188
고향사랑기금	216	168	168	-	384
사회복지기금	900	16	69	53	916
재난관리기금	2,227	476	970	494	2,703
옥외광고발전기금	789	14	150	136	803
식품진흥기금	322	10	71	61	332

- 당해연도말 복구청에서는 문화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조성 총액은 1,813백만원이며, 사용 총액은 780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1,033백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593백만원입니다.
- 복구청이 운영중인 기금 중 공유재산관리기금 및 고향사랑기금은 최근 3년간 사용액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21년에 설치되어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25년에 의회 승인을 받아 존속기한을 2030년도까지 연장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 기금 조성 이후 당해연도까지 집행실적이 한 건도 없이 384백만원이 구금고에 예치·관리되고 있습니다.
- 당해연도 사용액이 없는 공유재산관리기금 및 고향사랑기금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적절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3. 성과보고서 분야

#### (1)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설정 시 적정성 확보

- 「지방재정법」 제5조, 제44조의2 제1항 8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성과계획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 결산서의 구성요소로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는 정책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관의 노력과 관계 없이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책사업목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실현			
부서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4년 달성성과	'25년 달성성과
가족 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 , 개소)	(지원시설 수/ 목표시설 수) *100	목표	100(25개소)	100(26개소)
			실적	100(25/25)	96(25/26)
			달성률(%)	100%	96%

- 2025회계연도 북구의 성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가족정책과에서 설정한 성과지표는 정책사업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성이 미흡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아동 지원 예산은 817억원이나 성과지표와 관련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집행액은 약 30억원 미만으로 예산 대비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사업내용(보육료, 부모급여, 보육교직원 지원 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공형어린이집 개소 수는 교육부로부터 결정되어 울산시에서 배정받은 목표치로 기관의 달성 노력이 반영되지 않는 지표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지 못한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을 증가시키는 등 전반적인 보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과 산식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향후 성과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타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도전적인 목표치 설계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가 측정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1. 세입예산 편성 철저

#### (1) 전년도 권고사항

(단위: 천원)

부서명	목별	예산현액	수납액	사유
총무과	그 외 수입	-	50,066	소액건 세입미편성 및 편성누락
민원지적과	징수교부금수입	-	25,548	추정불가 누락
도시과	시도비보조금사용 잔액	-	26,600	사고이월 건 편성누락

- 예산편성부서 및 세입관리부서는 예산편성 시 누락되는 금액이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여 결산 추경 전까지 가능한 세입 실적이 누락없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고 반복적으로 수납액이 발생한 항목의 경우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 (2) 조치 결과 및 검토

- 해당 부서에서 미편성 세입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정확한 재정추계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적절히 이행되었으나, 2025회계연도에 세입예산 미편성 사업이 추가로 발견되어 권고하였습니다. 예산편성부서 및 세입관리부서 주관 하에 결산추경 전 누락 방지를 위한 부서별 내부 점검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2. 세입금 미수납액 최소화

#### (1) 전년도 권고사항

- 일반회계 예산현액 580,410백만원, 실제수납액 580,949백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이 100.1%로서 세입추계 분석과 징수노력을 적절히 하였으나, 미수납액이 14,900백만원에 이르며 이를 원인별로 보면 무재산이 536백만원, 행방불명 124백만원, 납세태만이 11,324백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의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 (2) 조치 결과 및 검토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전년 14,900백만원 대비 3.23% 감소한 14,418백만원으로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체납처분 고지, 행정제재 강화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해당부서의 노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납세태만, 자금압박 사유 등의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3.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

### (1) 전년도 권고사항

- 2024년도 2억원 이상 불용액 또는 불용율 20% 이상 불용내역 중 유의미한 4건의 사업을 살펴보면 불용율이 적게는 27.20%에서 58.67%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하면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거나 적절한 이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조치 결과 및 검토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불용액 과다로 권고된 사업들의 2025회계연도 집행현황을 살펴본 결과 불용액이 적게는 7.11%에서 37.67%로 낮아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이 전년 대비 504,250천원 감소한 것은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 4.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연말 계약 집중 지양

### (1) 전년도 권고사항

- 2024년 연말에 계약 건수가 집중되어 연간 2,235건의 계약건수 중 11월~12월에 총 498건 (22.3%)을 계약하였고 그 중 예산이 이월된 계약 건수는 약 17.9%에 해당하는 89건 (계속비이월 36건, 명시이월 23건, 사고이월 30건) 입니다. 이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연말에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기간, 집행예산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조치 결과 및 검토

- 확인 결과, 연말 계약 집중 지양을 위해 사업부서에서 추진사업별 집행실적 자체 점검 및 부서 실정에 맞는 실천계획 수립이행을 요청하는 협조공문[회계과-12130(2025. 6. 4.)호]을 시행하였으며, 2025년 전체 계약 2,141건 중 11월~12월 계약은 479건(22.4%)이며 그 중 예산 이월로 이루어진 계약은 56건(계속비이월 9건, 명시이월 26건, 사고이월 21건)으로 연말 체결 계약 대비 11.7% 수준으로 연말계약 집중 현상의 일부 완화 노력이 확인됩니다. 또한, 연말 계약 집중은 단순히 사업부서의 집행 지연으로만 보기 어려우며, 예산 편성 시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 준비기간 등 복합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연말 계약 비중이 여전히 일정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 및 절차 소요기간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서별 집행계획의 정기 점검과 선행절차의 조기 이행을 통해 연말 집중 및 이월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사고이월의 최소화

### (1) 전년도 권고사항

- 일반회계의 이월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34건 8,252백만원, 사고이월 13건 2,379백만원, 계속비이월 28건 35,257백만원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출납폐쇄를 당해연도 12월 31일 마무리하고 명시이월사업의 의회 의결요구는 우리 구의 경우 마지막 (제3회) 추경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유로 이월을 결정할 경우 사고이월은 극히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화 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월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 (2) 조치 결과 및 검토

- 예산 총괄부서에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서 정한 사고이월 대상경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기획예산실-8340(2025. 5. 28.)호]하였고, 2025 회계연도 사고이월은 10건, 1,85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건, 520백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권고사항에 따른 사고이월 최소화 노력을 확인하였습니다.

## 6.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확보와 추경 예산 편성의 효율성 강화

### (1) 전년도 권고사항

-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3,336백만원을 편성하고 제3회 추경예산에 5,368백만원을 증액하여 8,67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일반예산에서 감액(인건비 644백만원, 물건비 1,016백만원, 경상이전 2,117백만원 등) 조정한 것으로, 앞으로 마지막 추경에서 일반예산을 감액조정하여 예비비 예산으로 증액하는 것은 최소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각 부서에서도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요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양하고 의회에서도 전부서의 적절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도 집행잔액 최소화 지적보다 집행잔액 적정화를 요구 하였으면 합니다.

### (2) 조치 결과 및 검토

- 예산 총괄부서에서 권고사항 이행노력으로 예산 편성 시 세입·세출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기획예산실-8340 (2025. 5. 28.)호]하였고, 정기적으로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 7. 지속적인 건전 재정 운영 권고

### (1) 전년도 권고사항

- 2024년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으로 안정적,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2025년에도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 고유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의 세입 여건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시설 신축 및 복지예산 수요는 꾸준히 증가 하므로 세입실적, 전망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안정적,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 (2) 조치 결과 및 검토

- 확인 결과, 관련 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효율적 예산 편성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종합등급 “나” 등급을 획득하고, 특히 통합재정지수 및 채무관리 등의 건전성 분야 최고등급 “가” 등급을 획득하여 대외 평가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 및 현장조사 강화 등으로 과세 정밀도를 제고하고 세입 모니터링을 통한 추계 오차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무2과에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 세입 변동 요인을 적기 반영하였습니다.

## 8.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내실있는 성과보고서 작성

### (1) 전년도 권고사항

- 2024년 성과보고서를 보면 현재 부서별로 성과지표에 대한 초과달성 및 미달성의 원인 분석에 대해 부서별로 사용하는 양식도 다르고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초과실적을 달성하는데도 목표치를 상향조정하지 않는(예: 농수산물 지역생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실적 건 등) 등의 관리에 부실함이 있었습니다.
- 또한, 초과달성 20개 지표와 미달성 13개 지표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 성과지표가 한 단계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 (2) 조치 결과 및 검토

- 확인 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초과달성 20개 지표와 미달성 13개 지표에 대해 지표를 변경하거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과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지표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노력을 확인하였습니다.

## 9. 공유재산 목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

### (1) 전년도 권고사항

- 2024년 감소항목을 검토해 본 결과, 총 50건(42,030㎡) 62억원의 토지가 감소되었으며 처분사유는 입력착오, 합병말소 등입니다. 이중 31건, 35억원에 해당하는 합병말소의 경우 토지취득 완료 후, 필지를 정리하고 토지지번을 합병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소된 토지가 취득 시기(2017년 등)에 감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2024년에 와서야 오류가 발견되어 제거된 것입니다.
- 이는 합병 말소 시점에 완전성을 검증함으로써 적시에 발견할 수 있는 오류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취득한 토지의 면적과 감소된 면적의 합계 일치 여부, 취득한 장부가액의 합계와

감소된 장부가액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조치 결과 및 검토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124,900백만원이 증가한 1,027,245백만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무단점유·미관리 재산, 저활용 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전수 대사하여 현행화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공유재산 목록을 정비하고 무단 점유지를 발굴하는 등 관계 부서의 책임감 있는 적극적인 노력에 격려를 표합니다.

## 10. 성별 수혜분석을 통한 명확한 목표설정으로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제고

### (1) 전년도 권고사항

- 성인지예산의 성과 목표 설정 시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성과목표치 설정 또한 전년도 목표치에서 변동이 없거나 성별 수혜분석, 성평등 기대효과 분석이 미비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녀 수혜자가 많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성인지예산의 성과목표설정이 부재함으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성인지 결산 시 목표치에 실적이 달성하였음에도 달성여부에는 미달성으로 표기하는 등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미비함이 보이므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시부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타당한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조치 결과 및 검토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센터 컨설팅 및 타당성 검토 완료 후 신규사업 13건(문화예술회관 2건 포함)을 추가로 발굴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작성방법을 숙지하여 성별 수혜 및 성평등 기대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및 성과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제고 노력

### (1) 전년도 권고사항

-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22.94%이고 재정자주도는 37.64%입니다. 재정여건을 보면 사회복지가 281,303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4.4%를 차지하고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증액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인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17,426백만원 수납, △23.1%)하였고 조정교부금 역시 감소(61,560백만원 수납, △10.67%)하였으며, 자체수입인 세외수입(27,724백만원 수납, △5.96%)도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수령액 296,831백만원에 대한 구비부담분 49,287백만원을 우선 반영해야 하는 등 활용재원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존재원의 확보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체수입의 증대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조치 결과 및 검토

-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을 검토해보았을 때 2025년도의 재정자립도는 20.98%로 전년 22.94% 대비 1.96% 감소하였으며, 2025년도의 재정자주도는 33.36%로 전년 37.64% 대비 4.28%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 능력과 자율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관련부서인 기획예산실에서는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해 시세 징수 기여도 대비 교부금 배분 비율 상향 및 신규 재정수요 지표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세무1과에서는 비과세 감면분의 적정한 보전조치 권고에 대해 비과세·감면 자료의 사후관리를 통해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구세의 정확한 부과로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무2과에서는 고액체납자 전담팀 구성을 통한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였습니다.
- 그러나,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1.62%, 재정자주도는 63.44%이며 우리 구는 그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